

#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

의안 번호	237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1월 23일

발의자 : 이영아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항목 및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
- 나. 복지카드 사용, 수익처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없음

##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항목)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,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.

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, 적용기간이 종료 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.

제3조(자율항목) ① 하남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율항목중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.

② 의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(온누리 상품권)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.

제4조(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)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본복지점수 :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.
2. 근속복지점수 :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근속 1년당 10점씩, 최고 300점을 배정한다.
3. 가족복지점수 : 배우자 100점, 직계 존·비속 1명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. 다만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둘째자녀는 100점, 셋째자녀부터는 200점을 배정한다.
4. 출산축하 복지점수 :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둘째자녀 2,000점, 셋째자녀 이상 3,000점을 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를 준용한다.

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, 적용기간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.

**제5조(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)**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6조(회계처리의 특례)**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,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

**제7조(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 공개)**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 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